

제420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월9일(목)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상정된 안건

- | | |
|-------------------------------------|---|
| 1.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 1 |
| 2.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 2 |

(13시44분 개의)

○위원장 박찬대 의사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박찬대 의사일정 제1항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어제 의결하였던 대통령경호처 12명의 증인 출석요구에 추가하여 1월 17일 10시로 예정된 현안질의에 대통령경호처 8명을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인 명단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이 일부 있으니 관련 자료와 명단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증인 출석요구서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13시45분)

○위원장 박찬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등과 관련한 공사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공사 감독 책임 소재, 관저 불법 신축 및 증축 의혹, 공사 수의계약의 적절성, 관저 내 정자 시공업체의 정부 계약 수주 등에 대하여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요구안의 자구 수정 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해진 안건은 다 처리가 되었고요.

혹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 위원 예.

○위원장 박찬대 김병주 위원님, 몇 분 정도 발언하시면 될까요?

○김병주 위원 4분……

○위원장 박찬대 5분 정도.

○김병주 위원 예, 5분만 주세요.

김병주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증인으로 출석요구하는 명단 의결을 했는데 보안이라는 이유로 이름과 직책을 밝히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관련자들, 내란 관련자들은 보안이라는 뒤에 숨어서 본인의 취약점을 다 감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인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운영위에 나오면 본인 얼굴과 다 노출이 되는데 무슨 보안이라고 합니까?

예전에도 국정감사나 이럴 때 보면 경호처 직원들, 본부장, 부장급까지 다 나와서 했는데 보안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국회를 압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안이 중요하면 본인들이 법을 잘 지키면 될 일이지, 위법을 계속 저지르니까 증인으로 불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안의 뒤에 숨어서 본인의 취약점을 감추려는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실 운영위가 제대로 안 열려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운영위를 통해서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오늘도 제보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 하니까, 지금 얘

기할 테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정확히 답변 주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는 지난해 10월 10일 저녁 야간비행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북한은 같은 날 심야시간에 평양 상공에서 항공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지난해 10월 11일 날 발표했습니다. 무인기의 속도와 거리를 고려했을 때 10월 10일 드론사가 띄운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다가 북한은 평양 침투 무인기가 백령도에서도 이륙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드론사는 10월 초에 김포와 백령도, 속초 등에서 대대적인 무인기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넉 대 정도 띄웠다고 합니다. 10월 10일 북한에 무인기를 날리기 전에 사전 훈련에 나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드론사가 날린 무인기 가운데 하나는 경기도 연천 임진강변에 추락했고 10월 12일 새벽 주민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관련 사진이 있다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관련 사진을 제공하지 않아 직접 북한 평양에 공개된, 북한이 공개한 항공 무인기와 같은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결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다가 합참 주관으로 10월 11일 23시 20분쯤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이 항공 무인기 침투를 발표한 지 2시간 40분 후입니다. 이 자리에는 드론사와 지작사, 공작사, 해작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군 드론사에서 드론을 띄웠다면 분명히 합참에서 알아야 되고 지작사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작사령관도 알고 공중을 통제하는 공작사령관도 알고 백령도 지역에서 띄우면 해상을 통과하기 때문에 해작사령관이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날 회의 인원이 드론사령관, 지작사령관, 공작사령관, 해작사령관이 참석한 것으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무슨 내용으로 회의를 한 것인지 밝히기 바랍니다. 2시간 40분 전에 평양에서 무인기가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회의로 추정됩니다. 그 이후에 실제 군에서는 계속 ‘알려 줄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령부가.

이처럼 제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여러 정황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외환죄 미수에 해당됩니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를 가져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내란도 모자라 외환까지 획책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 나와 당당하게 해명하십시오.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의구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저도 회의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측 변호사가 어제 시답지 않은 궤변을 쏟아 내며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일이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언이고 혀소리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가 국정 안정과 경제 회생의 출발점입니다.

공수처·경찰 공조본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술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히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하루라도 빨리 관저에 들어가 윤석열을 체포하십시오. 공권력과 정당한 법 집행에 저항하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현행 범으로 체포하십시오.

우리 국회운영위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해서 어제 12명의 경호처 임직원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에 오늘 8명의 선발부장 등 포함해서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양심적인 경호관 여러분께도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박종준 경호처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성훈 경호처장 등의 명령과 내부 분위기에 휩쓸려 어쩔 수 없이 관저를 지키고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란수괴를 지키자고 경호관이라는 자랑스러운 경력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해서야 되겠습니까? 법원이 적법하게 두 차례나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이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호관 여러분, 내란수괴 비호로 내란의 공범이 되지 마시고 양심과 상식과 법률에 따라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고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증인 명단

증인(8인)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신문요지	출석요구일시
정 0	대통령경호처 부장	12·3 비상계엄 선포 등 현안	2025. 1. 17.(금) 10:00
남00	대통령경호처 부장		
윤00	대통령경호처 부장		
정00	대통령경호처 부장		
정00	대통령경호처 부장		
이 0	대통령경호처 부장		
위00	대통령경호처 부장		
유00	대통령경호처 부장		

○출석 위원(16인)

강유정 고민정 김병주 김성희 노종면 모경종 박성준 박찬대 서미화 양문석
윤건영 윤종군 이소영 전용기 정진욱 추미애

○청가 위원(1인)

천하람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입법심의관 주성훈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7.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7.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7.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7.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7.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7.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6)

이상 6건 1월 8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7.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7.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2)

이상 2건 1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요청서 회부

제420회국회(임시회) 긴급현안질문 실시여부 및 의사일정 협의요청

제420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요청

(이상 2건 2025. 1. 8. 의장 제의)

이상 2건 1월 8일 회부됨